

제317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13년7월24일(수)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	3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3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	3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	3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3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	3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3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8) .....	3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	3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	3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7) .....	3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	3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3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	3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	3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3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3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	3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3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3
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3
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3
2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3
2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3
2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3
2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3
2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3
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	3
3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3

(10시41분 개의)

○소위원장 김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다들 7월, 8월 현장방문도 하시고 지역구도 찾아보시고 정책투어도 하시고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학용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교문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의지를 가지시고,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야당의 유기홍 간사님께서도 그런 뜻을 함께 하고 계셔서 이 폭염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당의 강은희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이에리사 위원님 그리고 야당의 유기홍 간사님을 비롯해서 김태년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처라든지 국회사무처에서도 이 실무 준비를 하느라고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김장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간사님으로부터 법안심사소위 위원사·보임 요청에 의하여 민주당 이용섭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대신에 원래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김태년 위원님이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의 소위 회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박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8)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7)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균현 의원 대표발의)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3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10시43분)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순서는 전문위원 보고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

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쪽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44조2항에서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기 중 그 교원 직은 휴직된다.”고 한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 1일 의결된 개정 국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원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직하도록 한 당해 조항은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적용례” 부분은 개정 국회법에서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 교원인 경우는 휴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당선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하는 부칙 2 조는 삭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정부 측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은 겸직금지 관련한 법이라서 정부가 의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라서.

○소위원장 김희정 그래서 의견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은희 위원 이것은……

○소위원장 김희정 그런데 부칙 부분을 문제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지금 개정안 부칙에서는 “교원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국회법 부칙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 교원인 경우는 휴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냥 부칙 제2조만 삭제하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것은 지난번에 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서 합의했던 내용이니까……

○윤관석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회법 통과를 전

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김희정 예.

이의 없으시지요?

○김태년 위원 법 통과됐어요, 이것.

○소위원장 김희정 예, 이번달에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동의와 그리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부칙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김희정 의원, 정진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자료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후 의원님 대표발의안부터 보고드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무상 지원의 범위를 학교급식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해 교육감에게 학교의 자료제출 부담 최소화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쪽 대체토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안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순차적 실시’라는 부분은 고교 무상교육을 단순히 선언하는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어 동 부분을 삭제하거나 실시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등 재원 대책 없는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유은혜 위원님께서 토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님께서도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님 안 제1항에서는 제2조3호에 따른 학교, 즉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입학금·수업료·학교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무상으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김희정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제1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즉 고등기술학교 부분은 배제가 되겠습니다—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은 제10조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 즉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를 무상교육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식품비의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으로 되면 초·중등교육 전체에 무상교육이 실현되므로 유상교육 원칙, 예외로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현행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12조제4항 내용인데요.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그 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서 적용례를 2014년 학년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교육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나승일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원안

을 수용합니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추가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도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든지, 지방교육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존 공무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한시적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될 필요가 있겠고, 제안된 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경우는 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토론의 진행을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지 바른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실 위원 교육부 차관님,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점을 먼저 짚고 한번 가보지요. 한국의 교육 여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교육은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했을 때 국가재원의 추가적 부담이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추가 재정부담은 2조 8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중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이 있지요? 학부모들이 돈을 많이 주더라도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특목고등학교라든지 소위 말하는 자사고까지……

○김장실 위원 교육부는 어떻게습니까? 이런 데까지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현재는 지원할 고려를 안 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러면 만약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실현된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이 원칙이고 유상이 예외가 되는 그런 게 되겠군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것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재정적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부차관 나승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사립학교 중 학교장

이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책정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소위 자사고 50개교하고 사립 특목고 34개교 그리고 일부 사립특성화고 6개교, 일반고 가운데에서도 자율형 일반고 1개교 및 사립 고등기술학교 3개교, 12개 각종 학교가 현재로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장실 위원** 국가재정 여건이나 이런 교육부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의 초·중등교육하고 고등교육 그것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어떤 비율로 투자하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시다시피 지방교부금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옵니다,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약 2조 8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국고에서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흥 위원** 교육부에서 뭘 동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봐도 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겠는데요. 재정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할 때 연차적은 어떻게 합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해요 아니면 농산어촌부터 하고 어디어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미 장학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4년부터 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완성하는 계획입니다만 제1차연도에는 현재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한 읍면 이하의 농산어촌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기흥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지금 14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다음에는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다음에 2차연도에는 도시지역의 일반고 1학년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6년도에는 2학년 그리고 17년도에는 3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씩 들어가게 되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산이 연차적으로 2014학년도 경우에는 6096억 원, 15년도는 1조 2055억 원, 16년도에는 1조 7769억 원 그래서 완성되는 17년도에 가서는 2조 76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짐작하시겠습니까라는 예산 관계는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지금 순차적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의지 이게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의지는 확고합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가 한두 번 그런 경우를 본 게 아닌데…… 이것을 아예 부칙에다가 2017년까지 완성할 수 있는 연차적,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부칙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 놔야, 이게 예산부처의 저항도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어쨌든 이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 과제로서 해당부인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보고드렸던 확대 방식의 경우도가 변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작년에 누리과정 할 때도, 우리가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올해 문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적을 많이 했고.

교육부도 대응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재정부처하고 논의 과정에서 다 밀려 가지고 하나도 대책 못 세우고 지금 시행해 가지고 올해 생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방교육재정이 다 감액추경까지 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아무리 정부시책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 대책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냐 하면 거의 약 2조 5000억, 기존에 나가고 있는 것 빼더라도 한 1조 60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부처에서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의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우리 교문위에서는 이걸 부칙으로 아예 이 시행

연도들을 못을 박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고교 의무교육 관련 법률안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취지거든요. 다 무상교육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뒤에 보면,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까지 다 포함하여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지금 정부가 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하겠다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법으로 부칙에 다 넣읍시다.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담당국장 황흥규입니다.

혹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예, 말씀하세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대통령님 공약대로 2017년까지 완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동의했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예.

○**김태년 위원** 동의했으면 법에다 넣읍시다, 부칙에다가.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칙안에서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학비 보조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017년도까지 지원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이 재정으로 다 흡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형태로 해서 2017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하고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제가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후에 사실 당 내에서도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로부터 보고내용이 있었듯이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 자녀의 경우는 어차피 교육비용이 국가로부터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그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흥 위원** 뒤에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다 해야 돼요. 뒷부분까지 다 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희정** 뒤에 나오는 법안은 의무교육 법안이고 무상교육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부담을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지자체

에 안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안을 낼까 하다가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으면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나승일**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학비지원 예산, 타 부처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한 1조쯤 되나요?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공무원 자녀, 복지부 기초수급자 이런 것 4000억쯤 되나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

○**김태년 위원** 4000억쯤 되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1조 1570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체……

○**김태년 위원** 아니, 타 부처 것, 타 부처 지원 예산……

○**교육부차관 나승일** 타 부처, 지금 현재 3209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한 4000억쯤 되는 것 같던데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만, 지금 아까 처음에 14년도에 60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것은 총 소요액이고 현재 2114억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0억이 필요합니다, 2014년에. 그다음에 15년의 경우는 9400억 그다음에 16년에 가서는 1조 4000억 그렇게 하고 17년에 가서는 2조 150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김장실 위원** 순수 부담?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순수 순증액을 말씀드릴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원되던 것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기존에 지원되던 것이 14년이 약 2114억 그다음에 15년도가 2653억, 16년도가 3741억, 17년도에 가면 6108억이 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원 예산을 빼면 한 1조 7000억 정도 있으면 되는 거지요, 2017년도에?

○**교육부차관 나승일** 2조 1500억 정도, 왜냐하

면 토털 금액이 2조 7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타 부처는 지금 한 40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거 조정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거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그래서 이 법안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김장실 위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김희정**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빠진 부분을 좀 적시하는 거를 저희가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아직 관련 부처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지금 복지부라든지……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복지부나 안행부 이런 데서는……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을 생각했을 때에는……

○**강은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 교육비는 감면되고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한테 주는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 부처에서 지원되는 게 감면이 되고 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공무원 자녀요?

○**강은희 위원** 예.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그거는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강은희 위원** 그거는 별도로 그대로, 소액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김태년 위원** 지금 내가 다 못 봤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언제 완성한다는 거는 없는 거지요, 지금 발의안에?

○**소위원장 김희정** 시작에 대한 연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시작만 있고 완성의 연도는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예.

○**김태년 위원** 완성의 연도를 넣지요. 지금 뒤의 의무교육과 관련한 법 이것도 취지는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무상교육 실시하자라고……

○**유기홍 위원**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

닌가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제3항 정진후 의원 법안 그리고 제4항 민병주 의원 법안, 제5항 김태년 의원 법안은, 앞의 두 법안은 무상교육을 적시한 거고 3·4·5항은 의무교육을 한 부분인데……

○**김태년 위원** 무상교육을 포함하고 있어요, 의무교육은.

○**소위원장 김희정** 예, 5개 법안을 함께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무상과 의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무교육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부처로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기본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님 그리고 민병주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안들입니다.

현행은 의무교육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개정안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6년의 초등교육과 6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같은데 민병주 의원님 안에서는 단서에서 '중등교육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박홍근 의원님 안에서도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의무교육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전체를 의무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데, 박홍근 의원님·김태년 의원님·민병주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안인데 그 내용으로 12조2항·3항은 모두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3년간 확대함에 따른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은 김태년 의원님 안인데 현행에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조례로 수업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서는 취학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3개 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중학교 졸업 직후에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김태년 의원님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10조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안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사립학교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의 개정안은 김태년 의원님 안인데 현행의 단서 부분의 취지를 2항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에까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교육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나승일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의무교육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무교육은 강제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한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무교육의 경우는 역시 중요한 관점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고교 의무교육이 도입되게 되면 고등학교 입학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의무교육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진학률이 99.7%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가 다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꿈과 끼’ 항목이 1번이고, 두 번째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에서 고교 무상 의무교육 제공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도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로도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때 용어가 뭐였느냐면 ‘고교 무상 의무교육 제공’이었어요. 고교 무상 의무교육,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상 의무교육이라고 할 때 무상교육이었으면 말하자면 유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교육이 개인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본주의식 방식이었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복지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도종환 위원 그리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정도는 받아들이는 그 단계까지 와 있고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 등이라든가 고교입학제도 검토 이런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적어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고 그 정도는 실시하겠다는 것이었고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표를 췄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교육부는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히 그냥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넘어서는 국가의 책임을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무가 과거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크게 부각됐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몇 년 전의 유권해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동시에 의무교육기간에는 부모의 책무가 주어집니다. 이 의무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시켜야 된다고 하는

책무가 주어져서 소위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게 되면 고등학교 때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게 전부 금지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종환 위원** 그것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단계나 중학교 단계에서도 외국을 갈 수도 있고……

**○교육부차관 나승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아이가 유학을 간 경우에는 전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장이나 유학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해외에 동시에 이주해서 갔을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처벌을 하나요?

**○도종환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보다 더 큰 차원의 의무교육의 개념의 있는 것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새 정부도 국가가 정말 고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재정에 대한 부담을 100%를 가져가겠다라는 것,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OECD 34개 국가 중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까지 하는 나라는 8개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8개국의 나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이스라엘 벨기에 케나다 칠레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고요. 나머지 나라는 무상교육은 하고 있지만 의무까지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더 높고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학생들 학업성취도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 2위 정도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나라가 몇 나라다’ 이런 차원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현실을 놓고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의무를 집어넣고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주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 의무가 있고 국가의 의무가 있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의무를 져라’ 이 취지가 훨씬 더 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 의무를 강조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기·적성들을 발휘해서 고등학교 안 가고 다른 소질들을 개발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또 성공한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다 보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 학교 보낸 것이 불법이어서 처벌 대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차관께서 하고 계셔고 그것은 조금 위험한 말씀 같기는 하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 법을 통합해서 심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여쭙볼게요. 아까 2017년까지 완성하는 데 예산이 2조 몇천 억 이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누리과정도 있고 다른 여타의 교육재정 들어갈 게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20.27% 이것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당장 20.27% 가지고 확 나뉘는데 누리과정 하나 하나 까 핑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조정하는 것 관련법도 지금 3개인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교육부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리 ‘재정부처하고 예산 문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것 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양해하신다면 성삼제 기획

조정실장이……

○**김태년 위원** 예, 하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기초실장 성삼제입니다.

지금 누리과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같은 구체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완성연도까지는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부금을 얼마로 올려야 되느냐는 한 2017년 가서 정확하게 어떤 수요가 되는지 파악된 다음에 그러면 그때는 금액이 2조든지 3조든지 명확하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교부율을 올려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교육부가 벌써 그렇게 소극적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해결하겠다고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도 수차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뭘 국고보조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 교육청이 감액추경까지 하고 있는 게 이 현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부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재정당국하고 싸워야지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 줘야지요.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작년에 우리가 교육부 예산 심의할 때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의지를 가져라’ ‘위원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 좀 의지를 가져라’, 이것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저희들 의지 강력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저희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김태년 위원** 그런데 벌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아니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분 아니라

새로운 국정과제에 따라 한 135조가 소요되는데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개편이 필연적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교부율을 확정시켜 놓으면 아마 앞으로 2~3년 동안에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금 현재 우리 교부율 가지고도…… 율은 정해져 있더라도, 소득세 부분이 지방세로 이전되면 율은 감안했더라도 막대한 재정이, 국고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더 추가적으로 비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17년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것은 아직…… 만약 이번에 취득세 영구인하가 되면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비목 설치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 부분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취득세 인하는 보전되지만 국세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 취득세 영구인하가 되고 국세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비율에서 그게 0.7%가 될지 1%가 될지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나 내년에 미리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세가 지방세 조정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 부나 안전행정부도 또 지자체가, 교육청이 당연히 계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조정은 저희들이 한 2017년에 계수가 명확해지고 국세·지방세 개편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부나 안행부 그리고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이 공동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두 가지만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 중에 교육예산 있잖아요? 지방세 중에 의무적으로 시·도 교육청에다가 이관해야 되는 그게 한 5~10%쯤 되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조정 잘 하면 세목 조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큰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지금 지자체하고 기재부하고 관계도 있고 저희들은 지방세가 되면 그게 지방세에서 교육……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가 늘어나는 건데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만큼 교육당국에다가 줘야 되는 액수 이것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늘어나게 되면 거꾸로 기재부에서는 자동적으로 늘어난 만큼 교부율을 깎자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김태년 위원**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부분은 그 말이 아니지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국고보조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 법이 올라와 있는데 법을 오늘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취지가 빨리 하자, 제대로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오늘 법안 심사하기 전에는 재정당국하고 국고보조 어느 선에서 해결하겠다, 이것 갖고 있어야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지금 여러 부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완성 연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해 달라는 것을 교섭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오늘 당장…… 그게 재정 같으면 2017년 가야 전체 총 그게 드러날 것이라고 봐서 교부율 인상하는 것을 올해나 내년에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태년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것 2017년도까지 완성한다, 그다음에 재정계획 확실하게 세운다, 이것을 그냥 아예 수정안으로 넣읍시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몇 가지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무상이나 의무냐인데 의무교육을 발의하신 김태년 위원님도 말씀을 들어 보시면 사실상 국민의 의무보다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표현을

‘의무’로 했지 그게 담보가 된다면 ‘무상’에 더 방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인 무상이나 의무냐가 결정이 되면 두 번째, 지원 규모에 대한 결정 그리고 세 번째, 시행시기에 대한 결정,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무상교육에는 지금 반대의견을 밝히신 분이 크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규모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걱정하신……

○**유기홍 위원** 잠깐, 그것은……

○**소위원장 김희정** 아닙니까? 계속 논의를 할까요?

○**유기홍 위원** 그럼요, 그것은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논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이나에 대한 논의를 확정하고 나면 두 번째, 국가로부터의 지원 규모에 대한 결정 그리고 세 번째, 시행시기에 대한 결정, 이런 순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그전에요, 내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한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이것은 꼭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내일모레 그 법안을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학교비정규직법안 얘기할 때하고 교육부의 잣대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중 잣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추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부처 반대들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오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계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금 타 부처하고 협의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다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교육재정 전반의 문제를 보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제가 환기시켜 드리면 이 문제 말고도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들이 다른 것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추계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저는 느낌이 그렇게 명료하게 잘 와 닿지 않네요.

하여간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우선 저희들은 나름 이 과제만이 아니라 현재 국정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정은 저희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재정당국이랑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소요되는 재정뿐만 아니라 여타 재정과제들도 대부분이 일단은 어렵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것은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 과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기홍 위원** 정확하게 기재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재정 관련해서는 확정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7년까지 완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뭐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가 9월 달에 국회에 제출할 때 그때 합의된 안이 제출될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자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교 하나하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각 중학교 같으면 저희들은 넣자고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해서 안행부나 또 복지부, 기재부 의견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계부처가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교육부차관 나승일** 참고로 대상 학생이 약 166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7만 명이 지금 제외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런 숫자 때문에 추정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논의하면서 주로 무상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재정소요, 재정 준비, 재정 지원의 규모나 단계적 실시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의무교육적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러면 더 다른 쟁점이 늘어나는 게 의무교육을 하면 자사고라든지 외고 같은 데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 일반학교의 3배 되는 것을 정부가 줘야 될지, 만일 그렇게 되면 아마 단시간 논의 가지고 안 되고……

○**김태년 위원** 법안 검토 안 해 오셨구면. 그래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놔주세요.

○**도종환 위원** 여기 김태년 의원님, 민병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의 고교의무교육 관련한 법안을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헌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이렇게 의무교육으로 하되 자사고라든지 사립 외고를 뺐다 했을 때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하고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차관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무상교육이 정착되고 또 국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의무교육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일단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무상교육으로 하고 의무교육으로도 반드시 가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가야 되는 거는 정부 입장을, 지금 OECD 국가조차도 한 8개국 밖에 안 하고 나머지 국가는 의무교육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국가도 의무를 지지만 학부모도 강제 의무를 집니다. 그러면 해외 가는 걸…… 중학교, 초등학교 단계는 그렇게 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의무교육하면서 예외로 그냥 풀어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은 해외 가는 건 괜찮다, 그때는 지원 안 한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무상교육 같으면

재원 문제도 단순해지지만, 무상교육을 하더라도 일부 사립학교나 특목고 같은 것 제외하는 데 대해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나 우리 정부관계자 의견 합의하기가 쉬운데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고 그 범위에…… 학부모 채무성 또 재정부담은 단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한 거는 무상교육을 하고 제외되는 범위에 자사고, 사립 외고 그 정도 법률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유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본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까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99.5%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말씀하셨듯이 자사고라든지 비평준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입시, 그러니까 고교의 선택적인 문제들이, 아직 조율돼야 될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면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상교육을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드시피 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의무교육으로 가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재정의 문제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2002년생이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지금 학생수가 한 46만 명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한 65만 명대거든요. 2018년에 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게 되는데 학생수가 40만 명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도종환 위원** 중학교 의무교육이 논의가 되고 정착되고 완전 실시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8년 소요됐습니다.

**○도종환 위원** 8년 더 걸렸지 않습니까?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전체적으로 20년 정도……

**○윤관석 위원** 법 제정 이후에는 20년 걸린 거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죄송합니다. 제가 헛갈렸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이야기 거론해서 한 20년 또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중학교와 다른 게 고등학교를 만약에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중학교 방식으로, 왜냐하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먼거리에 실력이 안 되니까 떨어트릴 수 없는 거고요, 근거리로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만들어 줘도 되지만 고등학교 만들어 주는 문제, 또 하나는 90% 이상이 진학하지만 중도탈락 허용이 안 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무교육을 고3까지 부과를 한다 하면, 지금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퇴학도 시킬 수 있고 자퇴도 허용이 되지만 의무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퇴학도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적응을 못 해 가지고 자퇴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재정 문제뿐 아니라, 중학교까지는 20년 재정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근거리 배정이 되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재정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국가라든지 의무교육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철학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힘들지 않을까? 중학교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더 많이 소요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20년보다 더 걸리면?

**○김장실 위원**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준비를 첫째는 재정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었고, 두 번째로 용역 같은 걸 봤습니까?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재정 문제부터 아까 말했던……

**○교육부차관 나승일** 고등학교 입학제도라든지 교육과정에 관한 거라든지 학생 징계제도 다 챙겼습니다.

**○김장실 위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문제에 대한 용역을 봤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김장실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연구 중에 있지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엄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을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기간의 약속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안 A·대안 B를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국회에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 자료가 돼 가지고.

○**교육부차관 나승일**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제도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학생 징계제도 등 만약에 의무교육이 도입되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이 대폭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러면 이 법과 관련돼 가지고 의무교육을 했을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아까 실장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리된 게 있으면 배포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짚고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 점을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의무교육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퇴학도 못 시키고 외국에도 못 나가게 하고…… 나는 그런 설명들이 의무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의무교육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토론하지 말고 의무교육에 대한 태도를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지향해야 될, 가야 될 방향이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마치 대립적인 것처럼 자꾸 토론이 돼 가지고는 계속 물고 물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는 그런 겁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제가 아까 모두 답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됩니다만……

○**유기홍 위원** 아니, 그런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무교육에 대해서 현실에 안 맞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더 많은 나라가 채택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그게 또 금과옥조가 아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교육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 중의 하나인데 나머지 나라들이 더 많이 하니까 그게 더 옳은 제도고 의무교육은 더 적은 나라들이 하니까 지금 채택하지 말아야 될 제도고,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종환 위원** 학생들 자퇴나 퇴학 문제는 아까 기초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중학교·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서류상으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못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고, 교육현실, 아이의 가정현실 이런 걸 인정하면서 얼마든지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큰 엄청난 제도를 바꾸는데 소소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조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재정의 측면, 재정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적어도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가져오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면서 저걸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99.7% 정도,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진짜 이거는 국가에서 나서서 책임지겠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겠다 이런 의미까지를 포함했던 건데, 물론 교육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철학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재정의 관점이라는 현실도 있지만 철학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걸 2017년 안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넓게 정할 것인가,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에서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20~30년 걸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런 우려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무상교육과 함께 의무교육까지, 그 개념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도 거의 100% 가까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중도 탈락자가 고등학교에 평균 약 3.5%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나라라서 정말 가능하다면 최단기간에 의무교육까지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위원님 뜻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교육결정권,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될 때 소요된 연한은 의식수준도 그랬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는 재정이 주된 문제였다면 지금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도 문제되겠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하는 부분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현행 고등학교 제도가 그에 상응하도록 바뀌려면 이것도 시간의 문제라서 그런 점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린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막연히 시간의 문제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물론 의지를 가지고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우리가 무상의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정적 여력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면에서 그것은, 교육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특별히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당장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을 포함해서 특목고나 자사고나 여러 가지 입학제도와 관련한 것들이 정리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당장 의무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의 고교 입학제도를 포함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까지 무상의무교육이 된다면 거기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부분의 예외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에 준해서 봤을 때.

○**소위원장 김희정** 잠시만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계속 발언권을 안 얻고 막 발언하시는 것,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를 한 번씩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유은혜 위원** 그래서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됐을 때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을 어떻게 평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입학제도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도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시간이 걸린다, 그냥 미뤄 두기만 하면 계속 미루게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김장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이 된다는 일정기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 부분의 대책을 검토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시하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까지를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었던 것이고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법 안에 완성하는 기한이라든지 연차적 확대 범위를 적시하는 것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저희 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명료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일단 굳이…… 법 안에 시작하는 14년도를 명시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나 또 국민들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17년까지 완성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걸 주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법 안에 17년까지 완성한다는 걸 넣기 곤란하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것은 재정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다르고 또 재정부에서 17년까지 얼마만큼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는 사람도 사실상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김태년 위원** 아까는 2017년까지는……

○**교육부차관 나승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를 재정에서 예를 들면 보증수표처럼 딱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렵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추정된 소요치는 연차적으로 이 정도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모르겠어요. 아까 실장님이셨나요, 국장님이셨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기초실장입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까지는 완성을 한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것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2017년까지 완성을 하는데, 단계별로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 재정은 국고보조금으로 해결을 한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아니요, 그것도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김태년 위원** 아까 국고보조로 해결한다면서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저희 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부의 방침이? 그러면 지금 재정당국하고는 그 부분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 방침으로 놓고 보면 2017년 이후에 어떤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세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도적인 재정대책을 세운다 지금 이런 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교부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것도 2017년 이후라고 봅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하겠

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공약을 이행하려고 한다면 교육 분야 국정과제, 교육 분야만 보더라도 꽤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내년 예산 세울 때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세워야 되는 다른 교육 분야가 꽤 있단 말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컨대 반값 등록금 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도 또 늘려야 되는 게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새로 뭔가를 하려면 항상 저항에 걸리고 뒷순위로 밀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법 통과시켜 놔 봤자 재정당국에서 연말에 이거 예산 못 주겠다고 하면 말짱 황이거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정과제로 135조가 있는데……

○**김태년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재정당국하고 충분히 재정협의를 해 갖고 오세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017년까지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정계획 이걸 확실하게 세워 갖고 오세요.

○**유기홍 위원** 잠깐만요. 저도 거기 조금 보태서 더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희정** 유기홍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도 바라는 바고 17대 대선후보도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걸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런데 대체토론에서 아까 소개됐듯이 유은혜 위원께서 지난번 법안 상정 과정에서 대체토론할 때도 우려를 표했듯이 이게 선언적이 되거나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또 종합적인 재정계획 속에서 이게 추진돼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예산추계가 어떻게 되느냐에서도 액수 차이가 좀 있어요.

또 하나는 법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이나 당의 입장은 2017년까지 완성한다는 의지가 분명할 수 있으나, 죄송한 얘기지만 두 분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2014년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이 명료해야 이게 순차적이라든지 단계적이라든지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게 안 되고 일단 시작은 해 놓고 이게 언제 완성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만 믿고 입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얘기가 다르다는 것은 아직 명백하게 어떤 안이 만들어져 있거나 관계부처들 간에 합의가 지금 완성돼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점에서, 저도 김태년 위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생각에서 이게 좀더 분명해져야지, 이게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지만 앞세워서 일단 우리가 동의해 줬는데 나중에 가다가 무슨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상황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재정실무협의 담당자로서 실무적인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희정** 그렇게 하세요.

○**교육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2017년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종기를 명기하는 방법이 있고 시작을 표시하는 게 있는데 2014년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가 돼서 여당 위원님이 제안할 때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기를 2017년으로 못 박자 하면 그거는 새로운 부처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행부나 또 기재부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중학교 의무교육할 때도 종기를 명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종기를, 새로운 쟁점을 주면 아마 올해 내에는 부처협의를 어렵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종기 협의해 오라고 그러면 9월까지도 2017년을 법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못 얻을 가능성은 많은데, 그러면 재정당국은, 우리 부뿐 아니라 다른 부에도 다 재정 할당이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들의 교섭력이 더 떨어져서 오히려 시기를 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 부처는 어렵고 또 재정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반값 등록금 재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 확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명기한 이 법률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우리 부 실무 협의라든지 이거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나승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희정** 예,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2014년도에 추가예산이 얼마면 시행할 수 있으며 17년까지 얼마인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거를 왜 그 수가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추가 소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는 3982억입니다. 15년도는 9402억 원입니다. 16년도는 1조 4028억 원입니다. 17년도는 2조 1498억 원입니다. 이처럼 연도별 소요액을 분명하게 추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재부에서 1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 자녀에게 고교 무상교육의 학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이것을 2018년 2월 28일까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녀의 교육비용 지급을 우선 받도록 유예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기재부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담당 국장 황홍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대로 그것은 계속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기존에 타 부처에서 지고 있던 부담을 계속 그 부처에서 다 안고 있겠다 지금 이렇게 정부 간에 협의가 되고 있단 얘기인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고요. 다만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원장 김희정** 아니, 방금 나 차관님 말씀은 2018년까지 유예해 주겠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아, 공무원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첫 번째 항목은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 부분.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인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예, 그런데……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두 가지 항목을 넣어서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좀 줄이면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어떻습니까? 1번 항목은 협상이 끝났고 2번은 저희가 협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안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명시를 해서 국회가 부처를 좀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희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유기홍 위원** 그건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기재부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요, 다만 기재부는 교육재정 쪽에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약간 방법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일단 14년도에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지요, 현실적으로.

○**김태년 위원** 아니, 우리는 이게 2017년까지 가는 것도 늦다 이런 생각이요. 당장 내년부터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요. 정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2014년 15년, 한 2년 만에 완성한다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017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하니 그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 연차별 순차적 계획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아까 국고보조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국고보조 안 나오면 이것도 지방교육재정 갖고 해결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또 파탄 나요, 파탄 나.

○**소위원장 김희정** 김태년 위원님, 제가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추후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타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부분 명시를 못한 부분과 또 하나는 저도 처음에 법안을 상정할 때 부칙에, 그러니까 2014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걸로 저는 부칙에 처음 제출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나면 현재 2학년과 3학년은 만약에 제가 낸 원안대로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한 사람으로서 제가 수정 발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2014학년도라고만 적시를 하

고 거기서 ‘3월 1일’이라든지 ‘입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서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즉 2·3학년도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그렇게 하는 것도 2017학년을 넘지 않더라도 시작 시기를 명시하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안한 법안은 ‘14학년도 입학생’이라고 첫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도종환 위원** 학년도로 돼 있지요, 2014학년도. 이것을……

○**소위원장 김희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014학년도’라고 표시를 하고 가는 방법도 지금 법안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양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 나승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전 학년 학생들한테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의 첫 해년도인 내년도에, 14년도에 사실 2학년 3학년도 되기 때문에 14학년도라기보다는 14년도부터 또는 14학년도부터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김희정** 저하고 지금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제가 순간 좀 헛갈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종환 위원** ‘14년도’라고 해야지 2·3학년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학년도’ 그러면 1학년부터 적용되는 거고, ‘2014학년도’ 그러면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그냥 ‘2014년도’ 이러면 1·2·3학년 다 적용되는 거고.

○**소위원장 김희정** 예, 그냥 ‘2014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14년부터……

○**유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진전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은 2017년까지 한다는 부분이 계획이 어느 정도 서고 명시도 가능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초기에 좀 있었어요.

○**김태년 위원** 처음에요.

○**유기홍 위원** 그런데 뒤로 가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건 아니고 ‘일단 시작하자’ 그런데 일단 시작하자는 것을 우리가 그 수준에서 여기서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소위원장 김희정 ‘일단 시작하자’가 아닌 것으로 지금……

○유기흥 위원 아니, 사실상 일단 시작하자지.

○강은희 위원 2014년도는 농산어촌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유기흥 위원 아니 글썽, 그래서 여기서 이 표를 법에다 넣을 수는 없지만, 두 번째는 ‘도시 고1’ 그다음에는 ‘도시 고2, 도시 고3’ 이렇게 넣을 수는 없지만 이 법이 선언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하자’ 법이 아니라면 이게 언제까지 완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장실 위원 성 실장님!

저 발언해도 되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예,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지금 교육당국이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청와대와 재정당국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공수표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청와대에서 챙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시행을 해 놓고 17년까지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저희들이 넣어달라고 하는 게……

○김장실 위원 아까 넣어달라는 것을 넣으면 됩니까?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게 직접적으로 2017년까지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공무원법을 2018년 2월 28일까지 하면 그 부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공무원도 부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성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것은 기재부도 각 부처가 부담하는 것을 부담해야 국가나 저희들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동의된 부분은 부칙에 넣는 것은 괜찮은데 2017년을 넣는다는 것은 또 새로 협의해야 되니까……

○도종환 위원 아니, 지금 김장실 위원님이 공

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완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공약은 고교 무상의무교육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용적으로 무상교육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정확한 공약은 무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 정확한 대통령 공약입니다.

○김장실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교육부가 청와대하고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마 의무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무상방점을 찍고 무상을 2017년까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끝내고 의무교육은 좀 더 룹템을 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갖춘 후에 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나 차관님?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언제까지 어떻게 실시한다는 건 내용적으로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무상교육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던 말이에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공약은 정확하게 무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들을 수가 없어서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김장실 위원 그래서 나는 비록 법안심사소위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무상교육에 관한 2017년까지의 정부의 재정 의지가 이미 밝혀졌고 의무교육에 관해서는 추가로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엔가 교육부가 정부 부처, 청와대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내고 적어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무교육은 언제까지 실시를 하겠다 하는 것을 교육부장관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저희가 이해한 것은 의무교육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만약에 본 법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추후에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따라서 도종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본 발의된 법안에 어딘가에 표현되는 부분이 생략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관점을 도외시하거나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가 본 법안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안을 만드실 때 부칙에 적용 유예를 분명하게 표시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부칙에 적용 유예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이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자녀들 학비 주는 문제를 최소한 2018년 2월 28일까지는 지금처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바로 그 사항인데 이 사항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기재부나 저희 부가 의지를 가지고 2017년까지 무상교육은 좀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을 의지로 확인한다는 것은, 전체 중에 그것 타 부처 것 다 합쳐 봤자 4000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의지를 확인하라 이걸 좀 억지스럽고요. 지금 우리가 자꾸 재정 계획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오히려 교육부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보지만 재정당국하고 붙어 가지고 맨날 깨져서 오잖아요. ‘위원들이 이렇게 세계 이야기하더라’ 이런 것 좀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꾸 국고보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뭐냐 하면 국고보조로 시작했다가 지방교육재정으로 다 부담해 버리는…… 아까 특성화고 장학금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특성화고 장학금이 첫 해 국고하고 지방교육재정하고 매칭이었는데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버렸습니까? 국고 다 빠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하라고 다 떠넘겼잖아요. 이렇게 떠넘긴 사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 충분한 재정 계획 안 세워놓고 덜컥 법부터 통과, 저는 빨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 계획을 완벽하게 갖춰 놓지 않고 통과시켜 놨다가 자칫 잘못하면 예전의 사례처럼, 기존의 사례처럼 지방교육재정으로 다 떠넘기기만 해 버리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죽 설명하시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주셔야 된다고요.

○**소위원장 김희정**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논쟁의 쟁점은 몇 가지 아까 제가 요약해 드린 대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법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보다 법을 만들

었을 때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냐에 대한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명확한 의지를 지금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점심시간 동안에 정회를 한 다음에 정확한 문구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2014학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7학년도까지 끝낼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작할 때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잠시 2시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희정**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제가 정회 직전에……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던 거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되고 있는 이 수정안 관련도 아마 김태년 의원실로 어제서야 전달이 됐었던 것 같고, 이것도……

○**김태년 위원** 어제 밤에 와 가지고 나도 오늘 지금 처음 본다니까, 이것.

○**유기홍 위원** 그리고 오늘 얘기되고 있는 재정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아무런 보고나 협의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 점을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자꾸 왜 다른 것하고 연계시키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정말 내가 눈을 부릅뜨고 볼 거예요. 그렇게 목이 터지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돈이 없어서 6월 달도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고 이제 대책 내놓는다는 7월 달도 다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광석화같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김태년 위원** 아니, 제대로 전광석화처럼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유기홍 위원** 어제까지 보고를 안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놓고 ‘의지를 믿어 달라’ 그리고 ‘이런이런 조항을 보면 기재부 의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 믿고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의논해서……

○**소위원장 김희정** 정회하는 시간 동안 부처는 각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소위원장 김희정**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의무교육 관련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각각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야당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유기홍 위원** 물론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면이 있고요.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2014년에 시행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 기본적으로 단계적 실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언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계획이 서로 합의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2017년까지 이것을 완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설명과 계획이 미흡하고 그리고 자료제시도 위원들에게 충실하게 되지 않았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금요일 회의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아마 이 문제를 더 다루게 되면 오늘 지금 다루어야 될 다른 법안들을 제대로 다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쪽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금요일 날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민주당 소위 위원들이 같이 모았고 또 김희정 위원장님께도 이 뜻을 전달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야당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회 전에 교육부로 하여금 14년부터 실시해서 1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의지가 기재부에 있는지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분과 그러니까 차관님과 차관님 간에, 부처 대 부처로서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라는 것은 부처 책임자로서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확인했습니다만 2017년까지는 틀림없이, 물론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하고 있는 예산 규모하고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분명히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오전보다는 좀 클리어하게

진전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야당 간사님으로부터 제안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조금 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13, 14, 15, 16, 17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주시면 금요일 날 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먼저 다루기로 그렇게 여야 간에 조정했습니다. 맞지요?

○**유기홍 위원** 구체적인 순서는 간사들 간에 논의하고.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분만 명확하게 돼서 가급적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부처가 함께 뜻을 좀 모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쪽 조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을 보시면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견은 학교운영비의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간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걸** 담당국장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예.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걸**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그 부분은 기존에 초·중등교육법 32조1항 거기에 학교운영지원비 용어가 있고요. 30조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해도 적용상,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저희도 의견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한 데에 굳이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문을 참고해서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 있으십니까?

○**이에리사 위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서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걸** 교원연구비하고 시설비, 운영비 이렇게 써 왔는데요. 이제 현재 위헌결정일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랬을 때 이제 학교운영지원비가 안 나가니까 교사들한테 연구비가 지급이 안 되겠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걸** 예.

○**이에리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걸** 이번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쪽에서 학교회계지침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수당으로 반영해서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금년에 운영비를 애들이 냈을 때처럼 그 정도의 액수를 동일하게 교사들한테 지급하고 있나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걸** 지금 지급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에리사 위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쭙어 보는 거거든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걸** 예, 시·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시·도에 따라서 다르게 줬을 때 그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문제지요. 교육부가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맞춰줘야지. 그러면 교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선호도가 더 떨어지겠지요. 그것에 대한 것도 교육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걸**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일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무상교육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고등학교 교육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당장 처우 문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하는데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고등학교 의무교육, 무상교육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지요?

제가 사실 이 문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지금 여쭙 보는 건데, 사실은 동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시도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데에는 지원을 교육부가 해주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행처럼 되는 상태에서 교육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지요, 국가가.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그렇게 지침을 지난번에 내려 보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당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에리사 위원** 아, 내년부터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이에리사 위원** 금년에는 아니고?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금년에는 안행부에서 도중에 수당 반영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요.

○**이에리사 위원** 교육부는 노력을 하셨고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노력한 흔적은 있으신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가 있고요. 또 현재 시·도 교육청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금지하는 법안 개정예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런데 학교운영비에 학생들한테 징수하는 것 외에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율적인 협찬금이라든지 뭐 같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지금은 교복 말고요, 앨범비라든가 그다음에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경비 쪽에서 징수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명확하게 나눌 건데요? 지금 그게 학교운영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아닙니다. 학교 운영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관석 위원**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수익자부담 항목이 따로 있어요.

○**소위원장 김희정**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문 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는 거지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예.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이 원안대로 그냥 ‘학교운영비’라는 말을 별도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습니까?

○**유은혜 위원** 저요.

○**소위원장 김희정**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지금 여기는 12조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보면, 32조 그 뒷부분……

○**입법심의관 이승재** 4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예, 4쪽 32조1항9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과 관련해서, 이 법안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을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근거가 되는 이 조항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예, 의무교육을 할 때에는 이 규정도 삭제……

○**유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처리할 때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희정** 제32조1항9호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유은혜 위원** 예.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의무교육 완성을 어떻게 단계별로 할 거냐에 따라서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유기흥 위원** 의무교육이요, 무상교육이요?

○**유은혜 위원** 무상교육이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그러니까 무상교육……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전 실현을 언제 완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존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지금 바로 수정할 필요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지적을 유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박성호 의원님 안은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논의하셨던 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되겠고요. 또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부분은, 중학교 부분에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이 발의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물론 오전에 심사하신 안과 상당히 많은 관련성이 있지만 이 자체로써 판단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제12조 의무교육대상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금지는 큰 틀에서 다들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경우에 현행으로 하면 사립학교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를 국립학교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된 초·중등교육 지도·감독 체계와 연계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로 정의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아래에 두되 다른 국립대학 부설학교와 달리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 국가와 분리된 예·결산 운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 대한 특별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학교정책관 김영운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그 부설학교 설립 형태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리고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국립대학들도 혹 법인화될 경우에도 대비를 하는 겁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전문위원 보고한 부분 있잖아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같이 정비되어야 된다는 부분……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의 임용·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수업료, 입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회계를 서울대 법인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부속학교만으로 회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이 국립학교에 부설학교가, 그렇게 변경될 시에 인사 및 회계는 누가 관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서울대총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총장이 관장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김장실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교육부장관이 하던 것이지만 개정 법률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시행령에서 다시 또 총장에게 지도·감독을 위임……

○김장실 위원 위임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위탁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일단 원 개정안의 취지는 지난번 법률안 개정하면서 챙겨야 되는 부분을 못 챙겨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크

게, 그러니까 국립대학교의 부설학교가 같이 국립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전문위원이 추가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오늘 올라온 신계를 의원 개정안 이외에 추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되어야지 이게 세트가 맞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현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해서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학교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3항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중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2쪽에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중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령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부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 다른 국립학교가 준수하는 교육부령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3조의3은 교직원 임면입니다. 1항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을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대법 15조에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3조의4(법인회계와 통합 운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다른 국립학교와 달리 학교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3조의5(자본금 산정 등) 제1항 '제33조제3항에 따라 양도 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한다', 제2항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고 해서 2013년 1월 23일 개정에 따른 부설학교 국유재산 및 물품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자본금으로 산입할 것과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증여·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위는 국립학교고 운영은 사립학교고 그런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지금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만, 내가 몰라서 여쭙보는 건데요. 3쪽의 33조의4 이게 법인하고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학교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학교가 또 다른 학교도 있나요? 다른 형태의 학교도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학교회계를 별도로 독립하지 않는, 예를 들면 법인하고 또는 재단하고 통합해서 회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사립학교는 없고요.

○**김태년 위원** 사립학교는 없고?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최초로 유일하게…… 지금 현재 국립학교는 법인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국립대학법인은 그 사이 중간적, 사립학교도 아니고 국립학교도 아닌 절충형으로서 지금 서울대학교에 법인회계 하나만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해서

학교회계를 따로 구분해서……

○**김태년 위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예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회계를 두 번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효율적인 면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거꾸로, 이러면 학교에 좋아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부설학교예요?

○**김태년 위원** 예, 부설학교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아마 업무를 좀 줄일 수 있고 대학교 측에서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니깐 부설학교에는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업무부담이 경감이다?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유기홍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이 물론 날치기 통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수법안들이 제대로 통과 안 돼서 지난번 한번 했는데 이것을 또 빼먹어서 오늘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신계륜 의원 법안에도 빠져서 또 추가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사실은 보면 이게 자꾸 매번 이렇게 돼서…… 그런데 오늘 이것만 하면 이 문제가 또 있으니까 오늘 같이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도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의견을 우리가 받았는데 물론 나중에는 해소가 됐는데 그 부속학교의 교사들 같은 경우가 일시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 국립서울대학교법인의 의견인 것은 알겠는데 부설학교 측의 의견도 정확하게 다 같이 수렴해서 나온 의견이라는 것이 확실한가요? 예를 들어서 회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의 의미가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있겠는데 학교로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는 자율성이 좀 훼손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서울대가 책임지고 부설학교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입법조사관 심정희** 이것 유사한 예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병설유치원을 부설한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도 병설유치원은 원래 유치원회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학교회계에다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유기홍 위원** 학교회계로 다 해서?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

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차상으로도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가 지금 전문위원실에다가 법안 갖다 주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검토의견을 낸 데 대해서 서울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울대법도 지금 현재 미비점이 발견되고 해서 그것하고 지금 저희들 의견하고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서울대가 저희들한테 낸 것은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법안 심의 중에 나온 문제를 발견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유기홍 위원 좋게 해석하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예를 들어서 다른 부칙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2조3항에 관한 부분은 법적 미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칙 의견 어떻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학교정책관입니다.

저희들도 이 법을 대했을 때 과연 국립학교로 정의되었을 때 학교장하고 교직원 임용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회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직원의 임면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을 해 주시면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하여간 법인화에 대한 찬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시지만 사실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인화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국립 서울대학교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입법적인 미비로 해서 불이익이 그 부속학교에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차원의 문제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속학교 교원들과 그 학생들에게 입법적 미비로 해서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하는 것을 좀 막는, 줄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의결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예리사 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됐을 때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교사들한테나 학교의 어떤 것에 불이익이?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지금 신분은 사립학교 교원 신분인데 그 설립주체인 대학이 국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국립학교인 대학이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예리사 위원 지금 사립학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현재는 우리가 개정해 주지 아니하면 이 부속학교는 사립학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법안의 취지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 온 회계 통합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예리사 위원 법안을 내신 분보다는 전문위원이 내신 세부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법안을 만드신 분의 그 내용이 아주 상당히 왜소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안을 내신 분도 잘 검토하시고 이것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 법안 낸 사람은 한 가지를 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소위원장 김희정 아니, 법적 미비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예리사 위원 예, 물론 그런데 세부사항들에 있어서……

○유기홍 위원 이것 오늘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회계 법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견이 있으신지,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본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학교회계법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위원장님, 이 자리에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이 와 계십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아, 그렇습니까? 몰랐는데…… 출석해 있다고 말씀을 미리 하셔야지……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래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회의실 들어올 때 누구한테 얘기하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전문위원님, 출석에 대해서 여야 간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저는 들어오신 줄을 몰

랐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게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김종욱** 여기 계신 분이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들어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누가 그러셨다고요?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장흠** 교육부 국회협력관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학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장님이 오셔서 의견 진술해 주시는 것은 저희 진행에 마침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관계 직원하고 국회 직원 이외에 소위원회 회의실 들어오는데 언제 부처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기초실장입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렇잖아요? 부처가 국회사무처에 말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오신 학장님, 본인의 성함과 직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김종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 교수입니다.

제 문제로 해서 잠깐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아닙니다. 그것은 학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저희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김종욱**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할 때도 사립·국립의 논쟁이 있어서 그 이듬해에 국립으로 정의내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계륜 의원님이 대표로 이 법안 발의할 때도 이게 사립인지 국립인지 모호하니까 일단 이것은 국립일 수밖에 없어서 국립으로 정의내리는 법안이 발의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법안이 발의됐는데 검토 과정에서 이것저것 추가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사실 전문위원님이 보내 주신 이 안은 서울대에서 전부가 다 세세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라 괜찮으시다면 이번에 국립으로 정의내리는 것만은 상당히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꼭 통과 처리해 주신다면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전문위원실에서 위원회안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서울대에도 저희들 의견을 한번 보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에서는 다른 서울대법 미비점이 발견된 것하고 통합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입법조사관 심정희**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희정** 예, 말씀하십시오.

○**입법조사관 심정희** 이 자료는 저희가 지난 6월 소위 대비해서 6월 20일경에 서울대 학장님 측에 전달해 준 적이 있고요. 서울대 측에서는 위원회안 형식보다는 초·중등교육법 부칙으로 간단하게 교직원이나 회계 부분만 살짝 넣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저희는 그 형식은 곤란하다, 위원회안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학장님 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단 말씀입니까?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김종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는 검토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장님이 내용을 전부 아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국립대학교 여기에 관련해서 국립으로 부설학교도 정의 내려야 된다 그 보고말씀 드리고 의사결정을 다 밟았고요. 관련해서 혹시나 추가된다면 회계법과 관련해서하고 또 하나 교직원 신분 임면과 관련된 이 부분은 추가된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이었고 나머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이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아직 안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김종욱**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 여기 현재 전문

위원님 의견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 문건 가지고 저희가 법안발의 할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의, 예를 들면 본부의 관계자는 물론이고 총장님과 협의가 된 이후에 하는데 그런 절차상에 그게 좀 빠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기흥 위원** 학장님, 그건 서울대학교의 절차고요 국회 입법을 하는데 우리가 총장님 결재를 받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김종욱** 그건 아닙니다.

○**유기흥 위원** 좀 들어 보세요.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지금 한 번에 할 것을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이 법 또 빠졌다고 그래서 오늘 또 하고, 그리고 총장님 검토하고 나서 또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으시면 의견만 얘기하세요. 절차적으로 총장님 의논을 못 했다는 얘기는 그건 저희가 참고의견으로 들을 것이고 오늘 여기서 입법을 하는데 그게 하자가 되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절차가 미비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실 것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김종욱** 예, 좋은 말씀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학장님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관계 해당자하고 직접 연관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계속 앉아 계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학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김종욱**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원회안으로 가지고 온 것 중에서 2조3항만 들어가고 5장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2조3항은 선언적인 의미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소위원장 김희정** 그리고 나머지는 디테일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소위원장 김희정** 그런데 3항만 들어갔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지금 부설학교 교직원 임면에 관한 근거가 법률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당장 2학기라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규정을 안 하면 그것도 무조건 초·중등교육법을 따르도록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부설학교가 시행이 되자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소위원장 김희정** 죄송합니다. 제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2조3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보면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의 규정을 디테일하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2조3항으로 같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입법조사관 심정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는 지금 현재 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릅니다. 하지만 국립대학법인들의 직원들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분에 관한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임면 절차라든가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교직원 임면이나 입학금 및 수업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번에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희정**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김태년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물론 내용은 연관된 것이기 합니까라는 신계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법을 갖고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회계를 통합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없으면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 다음번에 처리를 하고요, 아주 큰 문제가 없으면. 오늘은 이 초·중등교육법만 통과시키면 어떻게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희정 이 문제를 또 논의를……

○도종환 위원 한 가지 여쭙 볼게요.

이 서울대 부설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이 일반 다른 초·중등학교하고 인사교류 하지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도종환 위원 앞으로는 법인이 되면 딱 가면 더 이상……

○입법조사관 심정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5년간에 교육공무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경과기간?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법은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신분이 바뀝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고는 인사이동이 안 된단 말이지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한 번 서울대 부설 중학교로 가면 더 이상 이제 다른 학교로는……

○입법조사관 심정희 아마 부설학교 간에만 인사……

○도종환 위원 부설학교 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인사이동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일반 학교에 있다가 대학 부설 중학교로 가고……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내년부터는 신규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네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원래 제출하신 아까 신계륜 의원님의 법안 부분에 다들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위원회안으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 고한 내용도 이 법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데, 보다 연관된 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유기홍 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드렸는데 법인화 과정에 대한 찬반을 포함해서 난맥상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편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설학교가 공중에 떠 있게

돼서 그것을 학생들이나 그쪽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는 서울대가 이것을 한 번에 해야 될 것을 지금 세 번에 나눠 하게끔 일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이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6월 달에 서울대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절차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무도 보고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야 이것을 보게 만들지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우선은 기본……

○유기홍 위원 아니,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미처 보고 못 드렸지만 서울대학교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으니 좀 해 달라도 아니야, 얘기를 들어 보니까.

뭘니까, 이게 도대체? 얘기를 해 보세요,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 법안소위 위원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잖아, 지금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이 자료가 오늘 늦게 이렇게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만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수용 여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도 이제까지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수용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 의견을 같이 자료로 제공을 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기 어려웠습니다.

○유기홍 위원 각 의원실에 지금 이런 일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도 못 하고, 다 복사했다가 이것 할 때쯤 돼서 확 지금 돌리는 것을 보면 준비해 오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법령에 대한 특별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의견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혹시 여쭙신다면 그때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그랬습니다.

○유기홍 위원 과정이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여기서 봤는데.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못 드렸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 그냥 참고 삼아서 하라고 올려놓은 건가요? 또 이번에 법안처리 하면서 이런 미비한 것들을 갖다가 참고용으로 올린 건가

요, 처리용으로 올린 게 아니고?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참고자료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법안으로, 위원회안으로 다시 채택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잠시만, 발언 순서를 이예리사 위원님이 제일 먼저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김장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이예리사 위원 저는 사실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고 나서 첫 감사였는데 그때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대학의 운영 주체는 사실은 법인화가 되면서 평의회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총장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건이 개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어지는데 그 평의회를, 45명인가 50명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3명만 외부인이고 나머지는 학교 내부 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평의회라는 것은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아마 원칙이 있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학생 대표 하나 교직원 대표 하나 무슨 대표 몇 명, 외부에서 몇 명, 여성이 몇 명, 그런 비율로 해서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밀어붙이면 다 되는 것 같은—서울대—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돼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가장 견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개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아까 김태년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회계 문제까지 대학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인사와 회계와 학교의 운영 자체가 총장 중심제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국가가 다 돈을 대주고 모든 것을 하면서 권한을 너무 과중하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하다 보니 문제가 돼서 어느 상임위원 어디든 누가 지적을 했을 때 개선하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이 밀어붙여서, 얼마 전에 또 신문인가 어디 기사도 났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저는 알아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당연히 맞는 거라고 해도 배고픈 사람

이 밥을 먹으려고 찾아야 되고 걸어가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다 알아서 해 주는 게 과연 괜찮은가라는 것, 그리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은 뭐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예결소위에서도 잠깐 있어 봤지만 아까 학장님이 들어온 것처럼 그날도 총장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밀어붙이면 다 되더라는 거지요.

이 국회 안에 서울대도 많이 계시고 선후배 관계, 이래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내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예,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국립서울대학교법이 통과되면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다만 이런 문건이 국립서울대학에서 우리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전문위원실이든 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가 된 거니까, 우리 스스로 조사를 해 보다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다가 이것도 보완해야 되겠네 해서 지난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한 건지 그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사대 학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총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처리한다니까 저도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처리를 해 주었을 때도 ‘이게 아닙니다’ 하는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서울대학에서 ‘지난번 법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이런 게 빠져 가지고 이것 좀 교문위에서 빨리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대학하고 그 뒤에 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서울대학의 완성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강은희 위원님.

○강은희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제가 이 법안 하기 전에, 법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오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실과 정부 부처에다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신분증 다 패용해 주십시오. 날이 덥기는 하지만 신분증 안 차고

계신 분들은 빨리 신분증 다 패용해 주시고요. 일단 부처는 올 때 배석자 명단을 사무처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나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당일날 그냥 누구 들어오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관련 법이 뭐뭐이기 때문에 관련 국장 누구누구이고 담당 과장이 누구누구인지를, 또 똑같은 지시사항을 문화부나 문화재청에게도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와서 소위원회를 처음 들어와 보니까 저희 소위원회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나 야당 간사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카메라가 미리 설치가 돼 있다라든지 회의 중간중간에 어떤 언론이 왜 취재를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카메라 불쑥불쑥 들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소위원회를 다 속기록 남기고 국민들에게 모두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회의는 모두발언까지 무슨무슨 언론사가 취재가 들어온다, 지금 중간에 무슨 언론사 카메라가 들어와서 회의하는 것 찍고 가도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적어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지를 하고 진행을 하게 해야지 언론 막 드나들게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관계 진술인 하는 부분도 그렇고, 실제 내용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그렇게 지키지 않고 여기가 도떼기시장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수석전문위원님도 그렇고 부처에서 온 사람들도 언제부터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위원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리 이리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명만 명시하는 게 아니라 이리이러한 내용상 미비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 두는 것과 범명만 언급을 해 두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했다는 측면에서는 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

서 국회사무처가 저희 의원들을 잘 보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법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범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어떤 내용이 빠져 있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검토보고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대형** 위원장님, 제가 언론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 해 왔던 것은요, 언론사가 들어오면 스케치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와서 설치를 하거나 할 때 모두발언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언론사가 찍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그것을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입법조사관 김대형** 소위가 지금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스케치만 하고 나가도록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언론사한테.

○**소위원장 김희정** 아직도 제 말의 취지를 이해 못 하셨습니까?

○**입법조사관 김대형** 예, 압니다.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회의가 정회했을 때도 녹음기 계속 틀어 놓고 있다라든지, 알아서 지우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규율을 지키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사실은 위원장님이 오늘 회의 진행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같은 생각이고, 사실은 서울대 측에 사려 깊지 못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좋게 해석하면 회의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나름으로 준비를 잘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공유가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문제는 처음에 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아니면 같이 처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누구의 실수건 한 번 해야 될 것을 지금 두 번에 하게 됐는데 두 번째 법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또 해야 될 필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계륜 의원 법만 하고 이것을 뒤로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누군가 새로 또 입법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 받아서 법을 새로 내서 몇 달 기간을 거쳐서 또 상정해서 여기 올라와서 그 절차를 또 거치고, 사실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뭐가 있었겠지만 두 가지 점인데 어쨌든 이 법을 우리가 개정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부속학교의 구성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정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볼 때는 효율성을 위해서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좀 미루자는 의견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위원들이 준비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같이 의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혹시 의견이 다시 모아질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유기홍 위원님 말씀에 다 전적 공감하는데 아까 확장님이 나가면서 꺼림칙한 말을 하더라고요.

○유기홍 위원 그래서 제가 나가서 지금……

○박인숙 위원 개인적으로 자꾸 빼요. 총장님이 뭐라고 다시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해 주려고 하다가, 확실히 했으면……

○소위원장 김희정 그런데 아까 유기홍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제가 국회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지적 안 했습니다만 여기 와서 본인들 내부에 대한 무슨 결재 얘기를 하면서 그 학교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게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지요.

○박인숙 위원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소위원장 김희정 제가 아까 부처에도 지적을 한 게 정회 시간에, 여기는 부처 대표자들로 와 있기 때문에 차관이 발언을 하거나 실장이 발언

을 하거나 국장이 발언을 하거나 과장이 발언을 하거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부처의 의견으로 통합된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의원들은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이지만 여기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기관의 대표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계륜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에리사 위원님 반대 의견 말씀하셨지요?

○이에리사 위원 예.

○김태년 위원 두 분도 반대 의견 아니셨어요? 다음에 하자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강은희 위원 저는 이에리사 위원님께서 양해 하시면……

○소위원장 김희정 이에리사 위원님 어떻습니까? 서울대에서도 아마 외부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이에리사 위원 다수 위원님들이 그게 양해가 되면 해야지요. 제 생각은 그러하고요.

○소위원장 김희정 큰 뜻에는 찬성하시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이에리사 위원 이렇게 알아서 해 주는 게,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거지요, 저는요.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관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제가.

○김태년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말도 안 했습니다만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입법부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계륜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되는바 함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책상에 올라와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제12항·제13항 김태년 의원님, 이군현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안 세 가지 모두는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문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시면 이군현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의 세 가지 법률안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받은 보건교사도 교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입법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군현 의원님 안은 5호·6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김태년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 안은 기존 1호·2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특수학교 교감란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감란의 이군현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태년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 안은—비교란을 보고 드립니다—보건교사에게 특수학교 교감 자격을 허용하고자 하고 있는데 특히 박인숙 의원님 안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또는 보건교사 2급 자격 소지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도 특수학교 교감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9쪽 자격종별 수업 및 담임·보직 현황은 정교사·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학교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의 학교 내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일반교사와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하고 보직교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김장실 위원 다른 일반교사 분들의 의견은 어

떤가요? 여쭙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일반교사들의 의견은 따로 없고, 특히 저희들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는데 교원단체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장실 위원 없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예.

○김장실 위원 사실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긴 합니다마는 일반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님들과 특수한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들 간에 약간의 장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일을 처리했을 경우에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무슨 문제가 야기되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쭙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희정 이에리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지금은 전문상담교사도 기용을 하고 계속 전문화돼 가고 있지 않아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예.

○이에리사 위원 특수목적으로 돼 있는 교사들에게 이번에 교감으로 문을 열어 주게 되었을 때 다른 특수목적 교사들도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예,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비교과교사라고 그러합니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저희들은 지금 그중에서도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2007 교육과정의 의해서 보건교과가 교과목의 선택과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왔다는 점에서 일반교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창체도 거의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체도 똑같은 경우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창체는 교과 수업이 아니고 창체활동입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것은 수업으로 안 칩니까? 대체할 수 있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선택과목이 교과로 따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명칭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교과교사의 종류는 뭐뭐가 있습니까?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교과교사 말입니까?
- 소위원장 김희정** 예.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교과교사는 각 과목 별로 다 있지요.
-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교과교사 중에서 빠진 부분은 보건교사만 빠진 겁니까?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보건교사,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로 나누는데 비교과 중에서도 보건교사는 지금 수업이랄지 또 여기에 있는……
- 소위원장 김희정** 아니,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사서교사와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교과교사입니까?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비교과교사입니다.
- 소위원장 김희정** 제가 방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교과교사의 종류와 비교과교사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소위원장 김희정** 교과교사의 종류에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교과교사는 제가 답변을 여러 가지라고, 국어·영어·수학 하는……
-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그런 교과 말고 보건교사 이외에 달리 분류할 수 있는 종류에 뭐가 더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장실 위원** 과목에 들어가서 교과로 가르치는 교사가 보건교사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보건교사도 비교과교사 중에 속합니다.
- 소위원장 김희정** 아까는 보건교사는 교과교사 라면서요?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보건교사도 비교과교사입니까?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비교과교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 강은희 위원** 그런데 아까 수업을 한다고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수업을 하지만 비교과

교사에 분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그렇습니다.
- 김태년 위원** 그게 왜 그러죠? 2007년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수업도 하는데, 그다음에 일반 보직교사도 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보건교사가 아직까지 비교과교사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지금 저희들이 교과교사·비교과교사에 대해서는 양성목적 등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사는 교과지도가 우선 양성목적이고요 비교과교사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과정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일이 양성체계, 양성과정, 정원 운영, 주요 직무, 수업 담당 여부 이런 것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희정** 유은혜 위원님.
- 유은혜 위원** 이 법안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과교사들 중에 보건교사에 대한 이야기 들만 되어 있어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 지금 8쪽에 보면 초·중등·특수학교에 보건교사와 다른 비교과교사들의 인원과 담임이나 복수담임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보건교사들이 인원이거나 담임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학교의 역할들을 맡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비교과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교사에게 우선적으로 승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비교과교사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소위원장 김희정** 또 발언 신청하실 분 없습니까?
- 도종환 위원님.
- 도종환 위원** 지금 보건교사 중에 전문직에 나가 있는 17명 통계가 8쪽에 있네요?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 도종환 위원**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나가 있는 장학직을 말하는 겁니까?
-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나가 있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 도종환 위원** 장학직이면 이미 교감으로 나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네요, 장학직에 가 있으니까?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장학사에서는 교감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도종환 위원** 이렇게는 열려 있는데 지금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들이 교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승진의 경로를 또 한 번 더 만들어 주는 거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자격을 드리는 것하고 실제 임용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종환 위원** 물론 그렇지요. 지금 바로 교감으로 승진할 만한 보건교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통계가 있나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5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경력 이렇게 일정 경력이 차면 일반교사도 교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연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길이 열리면, 그런 대상자가 되게 되면 갈 수 있는 길로……

○**도종환 위원** 형평성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보면 보건교사도 비교과교사라고 하지만 보직도 맡고 있고 부장교사도 맡고 있고 담임도 맡고 있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감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보면 보건교사가 지금 수업도 하고 있지만 옛날 양호 선생님이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교과 선생님들을 관리직으로서 장학하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할 때 일반교과 선생님들이 거기에 다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여전히 일정 정도의 거부감을 갖는 교사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관리자로서 학교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그 점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자격을 받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더 큰 차별이다 이런 판단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비교과교사의 종류 중에 이게 제일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자격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의 욕구가 아주 강하게 축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고 영양교사

도 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절대 수에서 욕구가 굉장히 쌓였던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형평성, 물론 다른 교사가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

○**김태년 위원** 해 주시지요.

○**박인숙 위원** 예.

○**소위원장 김희정** 여야 의원님들이 다 발의를 하셨네요.

○**도종환 위원** 학교 현장에서 형평성의 원리로만 하면 영양교사도 나중에 교감의 길을 열어 줘야 되지요.

○**박인숙 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그렇다고 다 할 것은 아니고요. 다 기회가 있으면 좋지요.

○**김태년 위원** 큰 방향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겠어요? 보직도 맡고 수업도 하고 과목도 만들어 지고 하면 자격을 줘야지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누가 시켜 준다는 것은 아니니까.

○**박인숙 위원** 영양 강의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줄 수 있다, 권한만 준다는 것이니까.

○**유기흥 위원** 판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양교사들도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을 먼저 해 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까지도 길을 열어 드릴지 하는 판단 문제라고 보는데……

○**박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숫자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이에리사 위원** 아까 교육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열어 주고 나면 다시 또 개정안이 나와서 이 집단 저 집단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네 분야의 비교과 담당 교사들을 한꺼번에 다 열어 주고 선택은 학교에서 승진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보건교사라는 게 사실은 글썽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학교에 들어와서 오래돼서 사람이 많아진 거거든요. 영양교사도 마찬가지로요, 학교에 급식

소가 있고 그래서 많아진 것이고, 그러면서 시대가 달라져서 상담도 들어오고 사서도 들어오고 된 건데, 그래서 인원의 문제고 능력과 연륜의 문제는 나중에 학교가 알아서, 교육청이 알아서 승진을 시켜서 교감을 만드는 것이다, 선택되어지는 것이라든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김태년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시기가 됐을 때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리사 위원** 사기 문제예요.

○**김태년 위원** 이해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보건교사가 학교의 보직교사 중에서 특히 교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종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신 의원님들의 법안을 보면 보건교사라는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마는 자격의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흥 위원** 차이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태년 위원** 다시 한번, 큰 차이가 뭐예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그러면 제가 간단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 기술상 이군현 의원님 안은 호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태년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 안은 기존의 안에 보건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추가하는 방식이 좋은지도 한번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군현 의원님 안은 특수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님 안에는 특수학교 보건교사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또한 박인숙 의원님은 한걸음 더 나아가셔서, 6쪽 비고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호를 사실상 신설해서, 지금 2호를 3호로 밀면서 2호를 신설해서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도 특

수학교 교감이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봤을 때 박인숙 의원님 안이 제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방식에 있어서는 이군현 의원님 안이 새로 호를 신설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빠진 것 있으면 교육부에서도 보고드리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이견이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일반학교에서 교감을 하면 특수학교에서도 교감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특수학교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요,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예.

○**김태년 위원** 새로 항을 신설하느냐 기존의 항에 하나를 덧붙이느냐 이것하고 특수학교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문제인데, 일반학교에서 하면 특수학교에서 하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빼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항을 신설하나 기존의 항에다가 덧붙이나 차이가……

○**입법심의관 이승재** 효력은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효력이 같잖아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요, 효력이 같으면.

○**유기흥 위원** 그 부분은 입법 기술적인 문제니까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내 보시지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위원님 지적처럼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효력상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비교과 교사가 추가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군현 의원님처럼 호를 신설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마이너한 부분이고,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용을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드래프트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뉘앙스의 문제네요, 뉘앙스의 문제?

○입법심의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호를 신설하면 뭔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같은 호에다가 해 놓으면 동등하다 이런 느낌의 문제이네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기왕에 해 주는 것이면 느낌도 같게 해 주는 게 좋긴 하겠다, 효력은 같으니까.

○유기홍 위원 법안 발의하신 위원님 두 분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하지요.

○김장실 위원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김태년 위원 법이 3개인데 3개가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하시지요,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다 비슷비슷해서……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법이 3개인데 하나는 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소위원장 김희정 특수학교부터 정리를 할 텐데요.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입법심의관 이승재 교육부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교육부에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장실 위원 특수학교에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일반학교와 같은가 다른가 그 차이점을 진술해 주세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특수학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특수학교 교사가 특수학교 교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초·중등학교 교감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특수학교 교감으로 임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일반, 특수 구분함이 없이 경력으로 1급에서는 3년, 2급에서는 6년, 이런 경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보건교사의 역할로 보면 성격상 특수학교에서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특수학교에서 더 클 것 같아요.

○김장실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또 교감 이상은 행정이니깐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초등학교 중등에서는 어떻습니까? 병기하느냐 각 호를 별도로 해 주느냐 방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에리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희정 이에리사 위원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특수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있어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예, 보건교사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 분들이 일반학교 교감으로 갈 수 있습니까, 특수학교 교사들이?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특수학교 교감은 일반교……

○이에리사 위원 아니, 교사들이 일반학교로 갈 수 있어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예, 갈 수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보건교사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일반학교로 갈 수 있고요.

○이에리사 위원 보건교사가 다른 일반학교의 교감으로 갈 수 있어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윤 교감자격증을 가지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리사 위원 교감자격증이요?

○김태년 위원 지금 없잖아요. 이것 해 줘야 가지요.

○도종환 위원 이제 만들어줘야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정리를……

○도종환 위원 박인숙 의원님하고 김태년 의원님이 낸 법안 방식으로 입법 기술을 채택해서 내용은 두 분이 조정을 하는 게……

○김장실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바 교감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입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다른 비교과 교사인 사서나 영양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도 향후에 이 분들의 역할이 확대가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의견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인 김태년 위원님과 박인숙 위원님이 초·중등 정교사와 병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역시 교감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무게감을 두기

위함인 것 같으니까 그 방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감에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가되는 것으로 자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이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4항 유기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인숙 위원님이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아마 시간상 오늘 법안소위에는 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시급하게 처리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남대 의대라든지 관동대 의대 같은 것이 사회적 문제가 돼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면은 있지만 우리가 8월 달은 아니고 하여간 9월 초라도, 8월 말이나 9월 초라도 법안소위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인숙 위원님 법안이 올라오면 병합해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유기홍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이 폭염에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야당 간사님과 얘기가 되기로는 9월 2일, 3일, 4일에도 교문위 법안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법을 박인숙 위원님이 제안했는데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안과 같이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먼저 선언해 주신 발의자인 유기홍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회관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비고란입니다.

초·중등학교의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초·중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부족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강은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특별한 의견 없이 수용입니다.

○**박인숙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선생님도 받아야 되는데요.

○**강은희 위원** 심폐소생술을 몰라서 못 하나까요.

○**소위원장 김희정** 학생뿐만 아니라……

○**이에리사 위원** 교사까지 포함해서.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그것은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하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법에 넣기보다는?

○**소위원장 김희정**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여기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라는 구절을 바꾸시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지금 바뀌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희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교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라든지 ‘모든 교사 및’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수정안이기 때문에 문정림 의원 법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위원회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라고 해야 됩니까, 교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직원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입법심의회관 이승재** 교직원도 직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교직원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요?

○**입법심의회관 이승재** 예.

○**김태년 위원** 교직원, 그러면 교원 및 행정직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입법심의회관 이승재** 예, 다 포함하는 교직원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제2조는 학생인데 교직원을 언급하려면, 교직원 조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 또는 제 몇 조에 따른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법문이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각급 학교들이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을 포함해서 교직원도 교육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소위원장 김희정** 아, 제2조는 학교를 명시한 것이구나.

그러면 교직원 규정을 넣는 것으로 하고, 반대 의견이 없으시지요?

문구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을 넣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입법 기술적으로 문구를 다듬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할 건이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의사일정 제16항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장은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대책 수립 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쪽,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3항은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상태 검사 결과에 따른 학교장의 사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란에 조문을 정리하는 차원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내용

상의 변경이 아니라 자구정리 차원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의2는 교육감의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검토하면서 11조의2 내용은 그대로 살려 두되 단지 현재 7조의2로 조 이동을 함이 체계상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 이동한 의견은 5쪽의 전문위원 의견의 안 제7조의2 제1항·2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치료비와 검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4쪽의 전문위원 의견, 4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내용을 손대지는 않고 조 이동으로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여기 재정적 지원이라고 했을 때 학교 내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아무래도 학교 운영비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에게 정신건강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큰 틀에서 이 법안의 제일 큰 정신인 정신건강 관련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필요할 때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넣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검사하는 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검사한 결과가 보안이 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각 취급하는 선생님이나 검사기관에서 보안이 잘 유지가 안 돼 가지고 누구누구는 정신상의 문제가 있더라 하는 식으로 가면 개는 학교생활을 못 하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힘들고 치명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실시한 검사가 개들 앞길을 막는 식으로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선언적 조항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박인숙 위원 원래 정신과 진료나 모든 진료는 다 비밀로 하게 돼 있어요.

○김장실 위원 돼 있지만 전문 의료진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훈련받은 거하고……

교사들이 일반학생 행정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인지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의료인처럼 관리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요?

○유기흥 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병원 쪽의 프로세스는 그런 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학교 내의 프로세스에서는 혹시……

그걸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실 위원 보안조항을 두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맞는 말씀인 게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결과는 보안을 잘 유지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1년 단위로 담임교사한테 인수인계되거든요. 새로운 담임교사한테 인수인계될 때는 그게 바로 다시 전달돼야 되고 그런 과정을 3년 내내 거치니까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유지하도록 명시해 주고 유념하도록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장실 위원 그걸 해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물질문명이 극성화되니까 정신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한데 낙인이 찍혀 가지고 재는 정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인계가 되면……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보안을 지켜 줘야 한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조금이라도 강제적으로……

○입법심의관 이승재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 작성·관리 기준에 따라서 하더라도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되는 경

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타법과의 관계도 한번 보고, 저희가 사실 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한번, 법사위원회 전문가하고도 한번 토론해 보고 이 부분을 보고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김장실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장실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은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만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보건법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검사에 대한 얘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규정을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해서 넣을 것인지, 학교보건법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조항을 별도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님!

○이에리사 위원 아까 박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기본적인 게 절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건법에다가 만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하기보다는 보건법 전체의 정신건강 검진과 관련된……

○이에리사 위원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것도 상담해서 정신건강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상담에 포함될 수도……

○박인숙 위원 정신건강법에 보면 거기는 또 다 있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특히……

○소위원장 김희정 이걸 학교보건법 전체 조문에 걸릴 수 있는 거를 넣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학교보건법 안에 개정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비밀준수의 부분과 관련된 의무를 주는 조항을 별도로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예.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그 부분 말고 다른 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유기흥 위원 됐습니다. 된 거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희정** 여기 체계 수정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구 수정한 부분 중에서 3페이지의 2호에 의원님은 검사 후에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관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전문위원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안하신 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왜 ‘검사 후’를 뺐지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래프트한 김미량 조사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미량** 각 호 말고 호 위의 본문에 보면 ‘결과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각 호에서는 중복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뺐 겁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은데 조금 순서만 바꿨으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래도 자구 수정은 또 디테일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내용에 변화가 없으면 자구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시키시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큰 내용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과 저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입법심의관 이승재** 그러면 이 내용과 비밀엄수의무 규정을 같이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미량**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만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할 때 현행 규정은 기록관리상의 규정만 있거든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할 때 보통 입법상 그거에 따른 벌칙규정도 같이 따라 가는 입법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도종환 위원** 그거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벌칙을 명시한다는 거는 좀……

○**입법조사관 김미량**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법학교의 관련성이나 그런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타법상에 어떤……

○**소위원장 김희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수준에 맞춰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기흥 위원** 그런데 벌칙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체계자구 수정처럼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법심의관 이승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아니, 벌칙이 아니고, 그러니까 벌칙이라고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나 행정처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학교 안에서의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종환 위원** 그거는 또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건 교육적으로 따로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학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교육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이 법에 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된지는 이들 뒤에 교육부 관련 법안 논의가 될 때 별도로 심사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표기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혀 결렬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여부에 대한 추가 보고를 법안 자구와 상관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학교보건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기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에 시정명령 공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의 업무를 현행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19조제1항입니다.

현재는 평생교육진흥원인데 개정안에서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제5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5항의 내용은 시정명령 공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교육부장관’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발의 당시의 내용입니다. 고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제2항에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의 의무를 현재는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시행령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8조의2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은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2조제5호의 신설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변경인가와 변경등록·변경신고 해태 시에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용수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법령 개정안을 전적으로 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사안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변경 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처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처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과 ‘국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쓰고 있습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용수 많은 경우는 ‘한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제가 알기로도 중앙기관은 ‘한국’을 쓰고 시·도 기관은 시·도의 명칭을 앞에 붙이는 방식으로 쓰는데 이거는 ‘국가’라고 해서 교육부의 경우는 ‘국가’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용수 지금 현재 시·도에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는 의미로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라는 용어를 쓰기를 원해서, 그걸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사족인데 보고의 비고란을 봐 주시면 교육부는 2012년 4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변경하는 정관을 변경해서 인가한 상태고 현재 법 규정과 관련 없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미 있으면 그렇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명령 공포의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행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법률로 올라운 겁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용수 그것 플러스 문구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올라운 겁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된 거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용수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시면 시행령이 나와 있거든요. 중간 정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제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을 상향해서 법률에 올리는 부분에 별이견이 없으면 아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돼 있는 거를 ‘교육부장관’으로 바꾸는 부분만……

다음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김장실 위원 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인가나 변경등록·변경신고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조항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강은희 위원 이때 대학기관은 빠져도 괜찮은가요? 원래 시행령에 보면 “그 권한을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감은 있는데 대학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학력미인정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학기관의 장이 빠지는 건가요?

○입법심의관 이승재 위원님,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은희 위원 예.

○입법심의관 이승재 이 조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원격대학도 있고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도 있고 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학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학력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금 포섭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것도 ‘교육부령’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아니고.

○윤관석 위원 다 손봐야 되겠네요, 정부조직개편 전의 거니까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자구 수정되는 것 말고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부제출안은, 첫째 학력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도를 폐지하고 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고, 둘째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사내대학의 입학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부제출안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3항·6항·7항의 삭제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로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안은—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참고로—학평에 대한 장학지도를 가능하게 해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인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안과는 상충되는 안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제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만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3호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도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확대해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1조의2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2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정명령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 부칙내용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잠시만 제가 혹시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학교보건법하고 평생교육법, 저희가 앞서 본 법안 고칠 때 이번에 개정하는 항목 말고 타 조에도 ‘과학기술부장관’이라고 언급돼 있는 것 있으면 ‘교육부장관’으로 고쳐서 함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가 수정하는 그 항목만 보지 말고 다른 항목도 같이 올려 주십시오.

○**입법심의관 이승재** 다 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웅수**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입법안인데요, 사실 정부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없애는 게 꼭 능사는 아닐 것 같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는데 그거를 법에서 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김세연 의원님실에서 이미 발의한 법안하고도 상충이 돼서 일단 학평과 관련된 조항은 정부입법안에서 이번에 심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고요. 나머지 우리 사내대학 건만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제안하신 부분 중에서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도 개선 부분은 정부가 지금 철회 의지를 밝히신 거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웅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조금 수정하겠는데요. 감독건도 김세연 의원실이랑 최종적으로 같이 물려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건도 정부 의견을 철회하신단 말씀하시고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웅수** 예, 그러니까 사내대학 건만 살리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희정** 제출했던 정부로부터의 의견이 그러니 저희는 5페이지에 있는 사내대학 입학자격 확대 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3호가 들어가서 하도급 관계의 종업원들에게까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도급 관계 중에 얼마만큼 계약관계를 오래 지속했고 뭐 얼마 이상

이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그것 없이 그냥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웅수** 아주 세세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대강의 틀은 정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은 사실 우리 근로자들에겐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실효성이 좀 있게끔 시행령에다가 잘 규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박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18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일부 조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위에 지금 두 시간 넘게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지금 4시 10분인데 4시 30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20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지역교육청’으로 약칭을 법률에서 해 놓은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0년 9월 1일 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역교육청’ 약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상의 명칭과 통일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의 법체계 및 법률의 우위성 측면에서는 법률 개정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국민의 이해 편의 등을 고려해서 법률상의 약칭을 시행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교육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길 지방교육지원 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서는 이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 ‘교육청’ 하니까, 그래서 2007년 에 바꾸면서 그 부분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은 지역교육청이라 한다’ 이렇게 그때 전문 개정을 하면서 바꿨었는데요.

2011년, 12년 그때 지역교육청의 기능들을 학교 현장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바꾸면서 그 명칭을 시행령에, 법에 지금 ‘지역교육청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대통령령에서 명칭을 정하면서 ‘어디어디 지역 어디어디 교육지원청’ 이렇게 명칭을 시행령에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들한테 익숙한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요. 현장을 지원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꾼 개념으로 보면 이 시행령이 바뀌고 법률을 바꾼다는 그런 점은 있지만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통일할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이것은 뭐……

○소위원장 김희정 하자고요, 이것?

○유기홍 위원 예.

○소위원장 김희정 시행령 바꾸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길 예?

○소위원장 김희정 시행령을 바꾸라고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길 지금 법률에는 “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박혜자 의원님께서 ‘교육지원청’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는 서울중부교육청 하던 것을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이렇게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법률에도 같이 일치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일치시키려면 그것을 지원청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바꾼다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나고요?

○도종환 위원 지금 명칭이 교육지원청이지요? 현재 교육지원청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산교육지

원청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길 예,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교육지원청 하고 교육장 이렇게 하지요?

○도종환 위원 파주교육지원청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김희정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유기홍 위원 이전 정권에서 그 무렵에……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주호 장관이 교육자치를 강조하고 교육부를 폐지해서 고등교육청으로 놓고 실질적인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다 이양해야 된다, 교육자치를 굉장히 강화하는 입장이었다가 본인이 장관되고 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명칭만 지원청으로 해 놓아서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서 방향은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실은 안 그런데 명칭만 그렇게 바꾸는 데 대해서 사실 우리는 좀 냉소적이었는데 방향으로서는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너무 군림하는 교육행정기관 상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으로 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게 맞고 늦게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그것을 일치시키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소위원장 김희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이대로 하는데, 앞에 나왔던 서울대학교 관련 된 타 법 개정 부분이라든지 이게 시행령에 바뀌어져 있으면서 법률은 손대지 않고, 물론 2년 전에 행정처리를 잘못된 거지만 향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이나 국회하고 행정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자료 1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의 정의에 창업이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부장관은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할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업무에 창업 지원 등을 명시하고 하부 조직에 창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1호 정의 부분은 산업교육의 정의에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 개정 부분은 3쪽 뒤쪽이 되겠습니다.

4조1항8호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2항 신설하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을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조의2는 4쪽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중소기업청장은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안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두 법 모두에 이런 내용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실제 시책 마련 시 두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자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답아서 의결하였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4조3항으로 신설되는 내용은 '산학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의 일반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 비용 부분을 괄호 속에서 '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해석의 적용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7조는 6쪽에 되어 있습니다.

7호에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산학협력단 업무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신설은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보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개정안은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은 산촉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선택하여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7쪽 35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 신설의 내용은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 호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대학지원실장 박백범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이 전부 수용합니다.

○김태년 위원 수용을 해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산촉법하고 창업 지원법하고 수립·추진 시행주체가 지금 다른데?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양쪽 다 임의규정을 두고 대학의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법이 아니고요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위원 전문위원, 양쪽 법에 이렇게 두어도 법리상으로는 별 문제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2개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한 것처럼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청과 교육부가 서로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법리적으로 문제없으면……

○유기홍 위원 조금 우스꽝스러운 것 아닌가?

○윤관석 위원 이게 긴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업교육 소관 및 최종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결국은 산축법이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든 학교장이, 그러니까 총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실제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쪽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링크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창업선도대학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에 따라서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큰 학교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현재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통과가 됐나요?

○소위원장 김희정 예, 통과했다는 얘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국회에서는 의결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산축법은 산축법대로 두고 이것은 학교 내에서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법에 아예 3호의 경우는, 몇조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법 제 몇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한다, 각 시책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을 이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법안상?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둔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공동 소관으로 하는 법

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법안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애들은 이 법에서 이것 따로 하고, 따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법안이 된 것이 있으니까 교육부장관이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지원의 시책을 수립할 때 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글을 여기다가 두는 게 법률의 모양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면 마치 하위법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강은희 위원 제 생각에 이렇게 두고 어차피 시행주체는 교육부나 대학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년 위원 관계없어요?

○소위원장 김희정 수석전문위원님, 따로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정부입법 형태로 정부 내에서 합의된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가더라도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만 없게 잘 운영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수석전문위원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김태년 위원 부처 간에 협의는 좀 해 보셨어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협의했습니다. 상호 간에 앞으로 사업할 때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이게 충돌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장관하고 중소기업청장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가 잘 될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던 것처럼 좀 우려가 되기는 하고요.

여기 3쪽에 보면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직무발명 시 보상에 관한 규정도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규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그것과 관련해서

는 발명진흥법에 정부는 이런 발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기청이든 교육부든 관계없이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에 정부가 보상하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하여튼 관리·감독하는 거요? 그런 규정들도 잘 되어 있나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대학에서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는 교육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그거는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요, 일반적으로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포괄적으로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그게 개별적으로 꼭 규정이 있어야만 관리·감독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뭐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어차피 발명진흥법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되어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지금 다른 것에 대한 의견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 법과 창업지원법이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법에 별도로 서술이 되어 있어도 두 부처가 상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산단 하부조직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찬성하십니까?

○강은희 위원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전담조직……

○소위원장 김희정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자료 1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AIST, GIST, DGIST 등 일부에 한해서는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육기관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법 2조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기술지주회사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 2조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KAIST, GIST, DGIST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KAIST나 GIST, DGIST는 개별 설치법에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고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기능이 융합된 측면이 있고 셋째로 경상운영비가 연구과제와 연계되는 연구과제 중심운영체제가 도입되어 교비회계와 산단회계가 분리할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뒤쪽 비고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문구는 법인격이 없는 학교도 포함되는 등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문으로 좀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하 부분은 위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위원님들, 크게 법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기흥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제일 큰 강점이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현재 GIST나 KAIST 이런 곳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산학협력단으로, 모든 연구과제 비용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운영비를 조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 법인화 없이 바로 대학교가 이런 기술지주회사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희정**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KAIST나 GIST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어느 대학과 달리 특허라든지 기타 기술 축적이 빠르게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단순히 기술을 일반 회사에 팔아먹는 것보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해서 창업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다른 회사에 팔아먹더라도 조금 고가로 팔아먹고 그 기술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그런 취지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산학협력단을 따로 안 만들어도 이 대학들은 대학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직접 그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회계도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투명성 있게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또 회계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3개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인 것 같은데 법안 취지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에 의하면, 지금 개정안 대로 하면 다른 학교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맞습니다.

○**유기홍 위원** 국방대학원하고 또 어떤 데가 포함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사관학교, 경찰대학 이런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유기홍 위원** 그런 데는 뭐 사실 여기하고 직접 관계없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문구를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새롭게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제21항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유은혜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2쪽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총장이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이 직접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거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인화의 의미나 서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조3항 현행은,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을 말하는 행정규칙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로 보다 더 제도화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국립대학법인 회계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안된 법안 두 가지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7항 박인숙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자료 1쪽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두도록 하고 이사 한 사람을 더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업규정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당연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19일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원 설치법에서 공공의료사업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은 이 내용 이외에 대학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법안이, 지금 박인숙 의원님 안이 수용되고 나중에 또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안이 심사될 경우에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정리를 해 줄 것으로 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9조의 내용은 제1항에서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은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원 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고란 세 번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차관이 당연직이사에 포함되어 있고 대학병원이 소속은 교육부이지만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쪽 보고를 드립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마는 한 가지, 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을 당연직이사로 했을 경우에 당연직 이사의 숫자가 비율이 너무 많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80%까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1인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를 1명 정도 더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비율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인숙 위원 80%가 아니고 70%인데……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6명 있는 데는 70%가 되고요, 7명 있는 데는 80%가 됩니다.

○강은희 위원 당연직이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너무 많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할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차관이 참석한다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그 이사회에 바로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부처에서 차관이 당연직위원인데 차관이 바쁘니까 못 가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대참을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 부처의 입장

을 회의에 반영하기 때문에 굳이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에 또 실·국장까지 한번 더 집어넣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아닙니다, 서울대학병원하고 서울대치대병원은 복지부 차관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립대학병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안 합니까?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김장실 위원** 그렇다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이사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의 수에서 그냥 플러스알파로 복지부 국장이 이사로 가면 당연직이사 수가 정부 규정 권고안보다 넘어서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 법안대로 그냥 무조건 플러스 1만 하면?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사실은 딱 정해진 권고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나치면 80%까지 당연직이사가 되므로 1명 정도 더 임의이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둔다면 그게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유기홍 위원** 당연직으로 하되……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그 1명은 당연직으로 받고……

○**유기홍 위원** 전체 정수를 늘린다?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정수를 11명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임명직 이사가 평균적으로 너무 적기는 해요, 2명~3명밖에 안 되니까.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복지부에서 당연직이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고 찬성을 할 경우에 당연직 숫자가 넘지 않도록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종환 위원** 원래 이사 수는 홀수로 하지 않습니까? 결정 과정 이런 것 고려해서 홀수로 하지요.

○**유기홍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왜 다른 국립대학병원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

었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다른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지방 공공의료원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양질의 공공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것 회의 다 참석하겠어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대부분 복지부나 기재부나 교육부나 담당 과장이 대리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희정**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봅니다.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영역에 보건복지부가 빠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당연직이사로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사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일단 복지부가 당연직으로 가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도종환 위원** 대학병원 전체는 몇 개가 돼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서울대학까지 13개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대의대·치대병원 빼고 11개입니다.

○**박인숙 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데 이상한 거지요.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나머지 11개 국립대학병원에 복지부에서 당연직이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안대로 그냥 플러스 1 해서 10명이 되게 하면서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교육부 의견은 2명을 추가를 하면서 1명은 복지부에서 당연직으로 가고 1명은 당연직 외 이사를 추가해서 밸런스를 맞추자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 유기홍 위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그렇게 자구를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희정** 이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학병원에 부담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교육부차관 나승일**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 유기홍 위원** 월급 나가는 것 아닌데요.
- 윤관석 위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이 꽤 많은데 그것을 다 참여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
- 유기홍 위원** 의지가 있다니까요.
-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당연직이사에 보건복지부 공무원 1인이 포함되면서 당연직 외 1인도 추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최고의 실적은 박인숙 위원님과 유은혜 위원님 두 분이 상당히 성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29항은 정부가 각각 제출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자료 1쪽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가 국립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교육공무원’을 ‘교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6조, 10조의2 부분은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에 따른 용어 전환이 되고 교육공무원을 교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에서는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

공무원을 전제로 해서 겸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법인 전환에 따라서 일부는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인 전환 시행일에 맞추어서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고란을 보고드리면, 현행 제11조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에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화 이후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들에 대한 경과조치와 단절 없는 겸직의 적법성을 위해서 소급적용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소급적용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대법인화법 시행 이후에 임용되어 병원에서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될 경우에 교육공무원으로 남아있는 교원들에 대한 경과조치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서울대치과병원법도 같은 개정안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정안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3조2항 부분은 치과병원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병원에서는 법인 설립일자로 모든 교수님들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이것도 바로잡는 것이니까요.

○**소위원장 김희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따른 후속조치이고,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겸직 규정에 대한 소급적용 부분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항·29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1쪽 주요내용입니다.

만 3세부터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계부처 간 협조사항을 추가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 간 교육정책적 공조를 공고히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조사항을 국무총리 소속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2호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에 관계부처 차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계부처 간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입법이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길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사안을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과제로 안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유아교육법을 만들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관계부처 차관님들, 국무조정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뒤서 사실은 그 연계 과정을 심의하도록 했는데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부처 간에 협조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하에서는 입법취지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흥 위원 두 분 의견하고 거의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좀더 노력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이 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데 다만 이 2호의 규정과 이렇게 한번 더 별도로 적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법안 기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 해 가지고 올라가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서 자구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상임위 올라간 법안 중에 벌써 한 5개 법안 인가도 지금 법안소위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법사위에 걸려 있는데 좀 이렇게 우리 상임위……

○유기흥 위원 이것까지 막하면 한번 쳐들어갑시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지만 이 한 규정이니깐 이상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분께도 교육부가 찾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서 이 2호의 의미를 살리겠다라고 충분히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께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같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안 기술상 이것을 굳이……

○유기흥 위원 아니, 둘 다 약간 유보를 달기는 했지만 이의 없다고 했는데 뭐 또…… 그냥 하지.

○강은희 위원 그런데 그게 같은 얘기를 한 줄더……

○유기흥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동안 했던 법 중에서 지당한 법들 많았어요.

○소위원장 김희정 이것은 정말 입법을 위한 입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유기흥 위원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강은희 위원 법사위에서 어떻게 볼지……

○유기흥 위원 사실은 우리가 법사위를 자꾸 상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을 의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강은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취지의 법이 계속, 2·3이 연계돼 있으니까.

○유기흥 위원 어떠세요? 이것을 금요일 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취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통과해도 좋다고 보는데 위원장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윤관석 위원** 금요일 날 하고 그 사이에 한 번 만나서 의논해 보지요.

○**강은희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유보 통합과 관련된 법안의 취지에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부처의 의지를 밝히는 걸로 할지 법안에 넣는 걸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있고 하니 저희가 금요일 날 계속해서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순서는 다시 의논하겠지만 해야 된다고 치면 이것은 좀 앞 순서에 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 순서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간단한 거니까.

○**소위원장 김희정** 예.

그러면 제31항,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2쪽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8조에서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현행에 되어 있는데 3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의 한국경진학교 인권침해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인권존중 인식 및 태도 함양을 강조하는 법적 요구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교원들에 대해서도 관련된 그런 인권존중은 지금도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입법적으로 뒷받침

해 주면 더 강화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위원님들 의견……

○**유기홍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수급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안심통장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연금은 관계법에 따라서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그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는 경우에 압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압류금지신청을 해야만이 그 금액을 쓸 수가 있는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개정안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안 제40조제2항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2항을 신설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150만 원을 말한다 해서 1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에 입금을 해서 수급권자가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학교정책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희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장실 위원** 그 통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압류당해서 고생을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현재 그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소위원장 김희정**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지금 압류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나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옳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을 거라는 예상을 해 보면서요.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는 급여의 몇 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위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급여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180만 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350만 원을 받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50만 원이라고 딱 정하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이 받는 월수입의 몇 프로가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지금 여기는 퇴직급여에 관한 거거든요.

○**이에리사 위원** 퇴직급여액 전체?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전체 퇴직급여액 중에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현재 정부에서 정한 것이 150만 원입니다. 이것만은 보장을 해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리사 위원** 최저생계비로 수입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져가는 돈에 관계없이……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퇴직급여액 중에서.

○**이에리사 위원** 연금에서겠지요, 그러니까 교육연금에서?

○**교육부학교정책관 김영운**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교사들의 퇴직급여가 차이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않습니다. 정년 보통 33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같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유기홍 위원** 교사들의 경우는 그렇지요.

○**강은희 위원** 원칙이 기초생활을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기홍 위원** 이게 최저생계비인 경우니까.

○**소위원장 김희정** 국민연금법에 있는 규정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중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저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

임해 주시면 제가 야당 간사와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시간에 고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여당의 강은희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김장실 위원님, 이에리사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유기홍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전문위원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와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